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51
----------	-------

발의연월일 : 2023. 12. 5.

발 의 자 : 서삼석·김승남·양정숙
박완주·오영환·이개호
한병도·김교홍·윤재갑
홍성국·조오섭·김남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촌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대상자가 어촌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수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최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선이나 어구 등을 매각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어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
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
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
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영이
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
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
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2.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수산업법」 제40
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
업의 허가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에 사용하는 어
선, 어구 및 시설물을 매각할 것

② 그 밖에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
행에 관한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

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
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 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3.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4.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출 것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2.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

을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어구 및 시설물을 매각할

것

② 그 밖에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